

## 영국의 규제개혁 현황 및 성과 사례조사를 위한 출장

2018. 10. 7. - 14.



### 1 배경 및 목적

- 영국의 규제비용관리제 및 영향분석 운영현황에 대한 규제기관(BRE, RPC) 및 연구자 면담
  - 영국의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는 영국 정부 부처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내에 설치된 규제개혁 총괄기관이며 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는 2009년에 설립된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영국의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을 심사하는 기관임
  - BRE 및 RPC 과의 면담을 통하여 영국의 규제개혁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의 비용관리제도 및 IA 제도 운영상 쟁점을 실무적 차원으로 접근, 국내 규제관리비용관리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최근 국내의 주요 의제 (agenda)인 혁신활동에 따른 혁신규제 제도를 영국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려 함.
  - 더불어 규제개혁에 관련된 학계 연구진과의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여 정부부처와 학계의 공통된, 또는 공통되지 않은 시각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함.
  -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실천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동 제도 주무기관인 금융행위감독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음.
- 영국 규제개혁 컨퍼런스(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2018) 참석
  - 규제혁신 현안들에 대해 영국의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 국가의 규제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자리 참석

## 2 출장 개요

- 예 산: 규제비용·편익 분석 검증
- 기 간: 2018년 10월 07일(일) ~ 14일(일),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영국 런던
- 출장자: 총 3명

	이름	소속 및 직함
1	이상무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팀장
2	조희아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4	이주원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 3 주요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0/7 (일)	13:30~17:25	출국(인천→런던)	· KE907
10/8 (월)	15:00~17:00	Better Regulation Executive(BRE) 면담	· 참석: Kim Wager, Ian Bishop, Stephen Almond, 이상무, 조희아, 이주원 · 장소: BRE, 1 Victoria St. London
	17:00~19:00	컨퍼런스 사전 reception 참석	· 장소: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King Charles St.
10/9 (화)	09:00~17:30	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Transformation, Technology & Trade 참석	· 주최: BEIS · 장소: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IMO)
10/10 (수)	10:00~12:00	Regulatory Policy Committee(RPC) 면담	· 참석: Philipp Aepler · 장소: RPC, 1 Victoria St.
10/11 (목)	09:00-16:00	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Transformation, Technology & Trade 참석	· 주최: BEIS · 장소: IMO

	16:15-17:30	London Presentation of the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참석	· 주최: BEIS, OECD · 장소: IMO
10/12 (금)	11:00~13:00	Dr. Jeremy Brice 면담	· 참석: Jeremy Brice, 이상무, 조희아, 이주원 · 장소: LSE, Connaught House
10/13 (토)+1	19:35-14:35	귀국(런던→인천)	· KE908 · 도착일자 10/14(일)

- 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세부일정

International Inspection Reform Conference 201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 (IMO)	
Day 1	
09:00-09:15	<b>Opening Ministerial address</b> The Rt Hon Lord Henley,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09:15-09:30	<b>Chair's Introduction</b> Graham Russell MBE
09:30-11:00	<b>Presentations from global leaders in the design of effective and proportionate regulation.</b> - Investment Climate: shaping the future for competitiveness, Catherine Masinde, World Bank Group - The importance of dialogue in international regulation, Céline Kauffmann, OECD - The importance of a multilateral approach to trade reform, Marion Jansen, International Trade Centre  Panel Q&A session
11:00-11:30	Refreshments
11:00-11:30	<b>Facilitated interactive session to hear and engage with senior UK officials to understand the UK perspective and priorities.</b>  <b>Facilitators:</b> Graham Russell MBE, Director, Safety & Standards, Sarah Smith, Deputy Director, Safety &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m Josephs – Director, Policy, Trade Policy Group,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li> <li>- Rachel Turner – Dire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li> <li>- Jaee Samant – Director General, Market Frameworks, UK Government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li> <li>- Lewis Neal – Director, Global Britain, UK Government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li> </ul>
<b>13:00–14:00</b>	<b>Lunch</b>
<b>14:00–15:30</b>	<p><b>Thematic Workshops (Session 1)</b>  <b>Interactive sessions to hear and engage with practitioners and experts on a range key thematic issues affecting regulators and busi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ulatory Delivery – Good Regulatory Practices: Requirements for effective regulatory delivery</li> <li>- Standards – Innovation and Standards</li> <li>- Trade Facilitation – The role of business in promoting trade facilitation reforms</li> <li>- Partnerships – Creating global partnerships and networks</li> <li>- Technology and Innovation – Regulation and Innovation: Can regulation be innovative?</li> </ul>
<b>15:30–16:00</b>	<b>Refreshments</b>
<b>16:00–17:30</b>	<p><b>Thematic workshops ( Session 2 )</b>  <b>Interactive sessions to hear and engage with practitioners and experts on a range key thematic issues affecting regulators and busi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ulatory Delivery – New approaches to regulatory delivery: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w regulatory models</li> <li>- Standards – Standards based regulation and alternatives to regulation</li> <li>- Trade Facilitation – The WTO – TFA: Facilitating SMEs to connect to the global economy</li> <li>- Partnerships – Engaging the private sector: The business voice for change</li> <li>- Technology and Innovation – Using technology to improve</li> </ul>

	regulation
<b>17:30–19:30</b>	Evening reception
<b>Day 2</b>	
<b>09:00-17:00</b>	Focus Visits
<b>Day 3</b>	
<b>09:00–09:30</b>	Opportunity for delegates to provide feedback and reflections on the focus visits to support in-country reforms
<b>09:30–10:00</b>	<b>Alessandro Liotta</b> Senior Counsel, Google – The business perspective
<b>10:30–11:30</b>	Global Regulatory Initiatives – Sharing ideas
<b>11:30-13:00</b>	<p><b>Thematic Workshops (Session 3)</b>  <b>Interactive sessions to hear and engage with practitioners and experts on a range key thematic issues affecting regulators and busi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ulatory Delivery – Opportunities for modernising regulatory delivery</li> <li>- Standards – International Trade and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QI) Initiatives: Introduction to the World Bank Group QI Diagnostic and Reform Toolkit</li> <li>- Trade Facilitation – Reducing Non-Tariff barriers for greater regional integration</li> <li>- Partnerships – Domestic Regulatory Co-operation: Primary Authority / National and Local partnerships</li> <li>- Technology and Innovation – Perceptions of risk: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technology</li> </ul>
<b>13:00–14:00</b>	<b>Lunch</b>
<b>14:00–14:20</b>	<b>Plenary session</b>  Simon Devonshire OBE will explore with delegates how the lessons learnt from conference can be implemented and the benefits of regulatory reform realised.
<b>14:20–15:50</b>	<b>Regional workshops</b>
<b>15:50-16:00</b>	<b>Closing Plenary session Remarks</b> Graham Russell MBE

## 4 주요 논의내용

### ▲ 1. 영국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면담

#### □ 개요

- 일시: 10월 8일 월요일 15:00~17:30
- 장소: 영국 규제개선국(BRE), 1 Victoria St. London
- 참석: Kim Wager(Head of EU and International), Ian Bishop(Head of the BRE framework team), Stephen Almond(Head of the BRE Strategy & Innovation team), 이상무 팀장, 조희아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 □ 주요 내용

- 규제개선국(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은 BEIS내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영국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각 부처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일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전 부처에 걸쳐 규제개선 정책과 관련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며, 규제비용관리제(OIOO, OITW)와 규제영향평가(Impact Analysis: IA) 제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음.
- BRE와의 면담은 크게 1)영국의 규제집행 시스템, 2)영국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 및 3)신기술에 대한 영국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특히 BRE는 영국 규제개혁의 전체 틀을 구상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1)과 3)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1) 영국의 규제집행 시스템

- 영국은 원칙적으로 안전 등과 같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general binding rule) 이외의 행위는 허용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특히 영국의 규제집행 체계에 있어 가장 주목할만한 특징은, 법적으로 규제

자(regulator)의 역할을 수행하는 약 70개의 독립적인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bodies)이 존재한다는 것임.

- 규제기관의 역할은 법률로써 규정되어있으며, 정부로부터 편당을 받기 때문에 운영 성과 보고서를 작성, 공개할 의무가 있음.
- 규제기관이 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해당 기관이 정부나 정치 영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나 정치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규제의 합리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함.
- 결과적으로 규제기관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함.

#### 2) 영국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

- Business Impact Target(이하 BIT)란 정부가 회기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규제비용 감축 목표치(기업의 직접비용 완화분)를 제시하고 규정 재개정을 시행한 뒤 회기가 종료할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영국은 중소기업 및 고용에 관한 법률(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에 따라 Business Impact Target(이하 BIT)제도를 도입함.
  - 2017년부터 총 5년 동안 감축해야하는 BIT은 £9,000 million 이며, 2020년 6월까지의 단기감축목표는 £4,500 million임.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937.4 million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 BIT 대상이 되는 의제 혹은 분야는 부처 장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안건은 부처에서 선별하도록 규정함.
  - 안건 선별에는 규제사후평가(PIS) 결과가 반영
  - 규제관리제도(One-In, Two-Out: OITO)는 BIT의 추진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회기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음.
- 또한 IA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어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IA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정책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의회 및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부처에게는 IA 품질 개선에 대한 동기와 유인이 있음.

- IA는 규제 실무자가 아닌 각 부처에 배속된 경제학자들이 수행하며, 이들은 최소 2~3년간 분석에 대한 훈련을 받은 후 실무에 투입됨.
- IA와 달리 규제사후평가(PIS)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 시행 후 5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함.
- 규제 관련 시행령에 사후 평가 실시여부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법조문화함.

### 3) 신기술에 대한 영국 정부의 규제정책

- 영국 정부는 혁신을 위한 다음의 규제개혁의 3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① 규제자(governer)간 협업을 통한 규제 품질 개선(advisory regulation): 규제자들간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시에 제공하여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함. 다만, 규제자간 협업은 법적으로 정한 절차나 장구는 아님.
  - ② 적용하는 규제(adopted regulation): 규제자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이를 규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 FCA는 금융 부문의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과를 통해 체득한 사실들을 새로운 기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규범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제시함.
  - ③ 예측 가능한 규제(anticipatory regulation): 혁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을 정비함. 예를 들어 자율운행자동차의 경우 당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출시토록 함. 이를 통해 자율운행 자동차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줌.
- 한편,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이후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여러 규제자들에게 나눠짐.
- 책임의 분산과 관련하여 BRE 관계자는 영국의 공공임대 공공주택인 Grenfell 화재사고(2017)를 예시로 제시하였음. Grenfell 화재사고는 건물 리모델링 시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된 사건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청과 외장재를 생산한 기업들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임.

#### ▼ 규제개선국(BRE) 면담



### ▲ 2. 국제 규제개혁 컨퍼런스 참석

#### □ 개요

- 일시: 10월 8일 17:30~17:00(리셉션), 10월 9일 09:00~17:30 및 10월 11일 09:00~16:00(컨퍼런스)
- 장소: 리셉션-영국 외무부(FCO), 컨퍼런스-국제해사기구(IMO)
- 참석: 이상무 팀장, 조희아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 □ 주요 내용

- 컨퍼런스의 오전 세션은 국제기구 및 영국 정부전문가(World Bank, OECD, BEIS 등)의 규제환경과 미래경쟁성(future competitiveness), 세계화에 따른 규제변화, 변화 기술 그리고 무역 등의 주제를 갖고 발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짐.
-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globalise)되는 세계의 경제 속에서 규제문화 및 환경이 국가경쟁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여러 데이터 및 증거(empirical

evidences)를 기반으로 논의됨.

- 또한, 기업친화적이며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환경 조성  
과 필수적인 규제(critical regulation)는 지키는 균형 잡힌 규제환경을 위해 정부 및 규제자들이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9일 화요일 그리고 11일 오후 세션은 5개의 주제(theme)로 나뉘어 워크숍 형태로 컨퍼런스 참석자가 선택할 수 있었음.
  - Theme 1: Strengthening Capacity Through Regulatory Delivery
  - Theme 2: Standards
  - Theme 3: Trade Facilitation
  - Theme 4: Partnership for Growth
  - Theme 5: Technology, Innovation and Regulation
- Theme 5에서는 'Can regulation be innovative?', 'Using technology to improve regulation', 그리고 'Perceptions of risk: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technology' 라는 소제목으로 3명의 전문가들이 PPT를 발표하고 이후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

▼ 국제 규제개혁 컨퍼런스



▲ 3.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면담

□ 개요

- 일시: 10월 10일 10:00~12:00
- 장소: 영국 규제정책위원회(RPC)
- 참석: Philipp Aepler(Assistant Director of European &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상무 팀장, 조희아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 주요 내용

- RPC는 규제안에 대한 영향평가서(IA)에 제시된 증거 및 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KDI 규제연구센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성격이 유사함.
  - KDI 규제연구센터와 유사하게 규제영향분석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규제연구센터와는 다르게 영국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며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분류됨(independent regulator).
- RPC와의 면담주제는 앞선 BRE에서와 유사하였으나 BRE와는 제도 프레임워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면 RPC와는 IA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RPC 라는 독립 규제기관의 특성, 시스템 등을 논의

1) IA의 법적 지위

- BRE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하였듯 IA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요구사항이 아니며, IA 작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부처에서 함.
  - RPC의 설립이나 IA 운영에 법적인 기반이 없어 한국의 사회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영국의 정치 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모두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영국의 경우, Better Regulation)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음<sup>1)</sup>. 이러한

1) 면담자는 이것을 정부의 commitment 이며 이는 강력한 의지임을 강조

정치적인 합의만으로도 RPC나 IA의 존립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음.)

- 즉, IA의 역할에 대해 영국 정부 내의, 특히 고위관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understanding at the senior level)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부처들에게는 IA를 작성할 유인이 존재함<sup>3)</sup>.
- 다만 부처는 향후 규제 재개정 계획을 BRE에 제출하는데, 일부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BRE 또는 RPC가 부처에 IA 작성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RPC는 IA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IA작성을 부처에게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음.

## 2) IA의 작성과 검증

- IA의 작성대상은 연간균등순비용이 500만 파운드 이상인 규제임.
  - 이는 작성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아닌, 작성이 권고되는 기준임.
  - 2017년 말까지는 연간균등순비용 100만 파운드 이상의 규제에 대해 적용되었는데, IA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2018년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변경 이후 IA 작성 건수는 약 90%가량 감소함.<sup>4)</sup>
  - full-scale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기 앞서 연간균등순비용의 크기를 가능하기 위하여 규제비용편익에 대한 개관평가(overview)를 진행함.<sup>5)</sup>
- 다만 각 부처는 규제 재개정 계획과 및 규제의 예상 연간균등순비용을 BRE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 특정 안건에 대하여 RPC가 IA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처에 IA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IA가 포함해야 하는 영향분석의 기준이 모든 안건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며, 연간균등순비용의 크기에 따라 IA가 포함해야 하는 상세 내용 및 근거

에 차이가 존재함.

- 실제로 이러한 차등화 방법과 관련한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비례성지침(propportionality guidance)라고 함.
- IA를 작성해야 하는 단위는 (한국과 같이 개별 조문단위가 아니라) 정책단위로 이루어짐.
  - 따라서 부처에서는 IA 작성 회피를 위해 분석 안건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IA 작성단위 설정에 대해 RPC가 관여하기도 함.
- BIT(Business Impact Target)는 기업의 규제순응비용 감축 목표지로서, 직접비용의 감소분만을 지표로 삼는데, IA에서 추정된 기업의 연간균등순비용은 추후 각 부처의 BIT 달성 수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됨.
- 현재 각 부처에서 IA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market impact)보다는 기업의 순응비용의 크기와 이를 줄이는 방향(business impact)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3) RPC 운영체계 및 역할

- 거듭 RPC는 IA의 검증을 담당하는 독립적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body)임.
  - 물론 어떤 조직이든 완벽하게 독립적(fully independent)일 수는 없으며, RPC 역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임.
  - 그러나 RPC의 의사결정에는 누구도 외부적으로 정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결국 영국의 규제기관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독립적임을 의미함.<sup>6)</sup>
- RPC는 RPC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정부 부문이고, 위원회는 정부와 분리된(arm's length) 기구임.

2) 이러한 정치문화를 극명히 나타내는 예시가 바로 헌법의 존재 여부인데, 많은 나라들에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영국은 헌법이 존재하지 않음. 즉, 영국 정부와 국회에서 합의되고 공포된 사항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법률로서 규정된 사항들과 동일한 무게감을 갖는 듯함. 면담자는 결국 한국에 IA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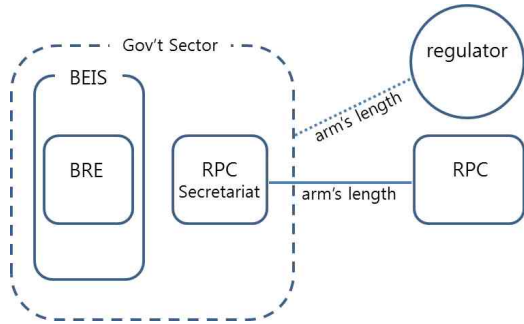
3) 만약 IA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red or amber 평가를 받는 등) 작성하지 않아 받는 정치적, 사회적 비난에 대해서 고위직(부처 장관급)들은 의회에서 질타를 받게 될 확률이 있으며 이는 영국의 정치적 특성상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소속 당에서 도태될 여지를 줄 수 있음.

4) 500만 파운드로 조정된 배경에는 대부분의 신설 또는 개정안의 연간균등순비용이 100만파운드에서 500만 파운드 사이로 파악됐기 때문임. 그러나 제외된 90%의 규제 재개정안 중 500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향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국 내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다고 함.

5) 정식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대략적인 비용편익의 가능성이 가능한지 또 그것의 정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도 정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라 답변

6)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RPC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규제개혁(better regulation framework)에 대한 영국 정부의 신념을 의미한다고 강조함. 오히려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기관이 여러 외부 이해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일 수 있는 이유는 재정적 지원이 정부로부터 오기 때문임. 이와 관련해 RPC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임: "정부는 차기년도 RPC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 이 분명한 이유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임."

< BRE와 RPC 그리고 규제기관 >



- 나아가 RPC 사무국에는 총 6개의 팀이 있는데, 각 팀은 4-5개의 부처를 담당하며, 팀과 각 부처는 주기적으로 만나 재개정 예정인 규제와 관련된 데이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이렇듯 IA 작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RPC와 부처가 협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IA 품질을 제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함.
- IA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RPC와 각 부처 사이에 정보 불균형(informational asymmetry)이 발생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처가 데이터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보 불균형 역시 RPC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이유이며, IA는 정부가 가공한 정보로만 판단한다면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없다 해석하고 있음.

4) 향후 KDI와 RPC의 협업 계획

- RPC는 연내 홍콩 등에서 영국의 규제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면담 대상자(Philipp Aepler)는 RPC 사무국(RPC secretariat) 소속의 국제협력 담당자로, 외국과 규제개혁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이에 향후 KDI와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며, 귀국 후 RPC 측에게 '19년 상반기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함.

▼ RPC 면담



▲ 4. 영국 규제개혁 관련 학술연구자 면담

□ 개요

- 일시: 10월 12일 10:00~13:00
- 장소: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회의실 CON 7.04 (LSE campus in Connaught House)
- 참석: Dr. Jeremy Brice(FSA/CARR Research Officer, Centre for Analysis of Risk and Regulation), 이상무 팀장, 조희아 연구원, 이주원 연구원.

가. 기술혁신과 규제

1) 신기술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

- 영국 내에서 기술혁신이 규제에 의해 저해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영국의 규제프레임워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EU legislation 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 Primary legislation을 준수해야 함.
  - 특정 분야(농업 또는 식품과 같은)의 EU기준들은 규제강도가 매우 높아 영국 정부의 자율성이 높지 않음.
  - 그러나 EU 기준이 약하거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국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특정 분야에서는 신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혁신제도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예: 규제샌드박스).
-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혁신이 국가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다만, 혁신의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 정당(Labour and Conservative parties)의 의견이 상이함.
  - Conservative party와 같은 경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위해 민간 기업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Labour party는 소비자 보호(Consumer's environmental protection)를 강조
  - 그러나 혁신에 따른 편익이 혁신에 따른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아직 정책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음).
- 따라서 규제 혁신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야별로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기존에는 혁신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좋은 혁신과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나쁜 혁신으로 구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그린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에 접근적인 반면 유전자 변형이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 2) 규제혁신과 정부의 책임

-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함께 지게 될 것이며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복잡함.
- 이론적으로 규제혁신으로 인한 리스크는 BRE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7) 예시로 논의한 Grenfell Tower 의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규제

영국의 규제관련 발생한 리스크는 관련 부처들과 기관들이 함께 분담(책임소재를 세분화함).

- 영국에서 발생했던 대형 건축물 화재사고 Grenfell 화재사고의 경우 영국 정부, 관련 부처, 그리고 발생한 지역 지자체(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받음) 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에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들을 허가하고 사용한 민간 실험실 및 기업들도 책임을 짐.
- 영국에서도 혁신에 대한 책임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슈임.
- 다만 영국정부의 입장은 해당 분야에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책임소재가 여러 단계로 나뉘고 특정 기관이나 인물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는 혁신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오히려 활동을 촉진시킴.

## 2) 영국의 규제관리제도

-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평가하듯이 영국의 규제관리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영국의 규제관리제도(규제비용총량제, 규제영향분석서, BIT 등의 제도)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제도의 성과 유무와 상관없이 이를 지속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임.
- 그동안 영국에서는 규제완화(cutting red tape 과 같은)가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필요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Grenfell tower 화재사고와 같은 사건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함.
- (영국에서 조차) 현재 IA에서 BC분석은 사실상 기업의 규제순응비용 추정에 정도되어 있으며 사회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는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론적으로는 사회의 전체영향평가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사회적 영향을 화폐 가치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학문적으로도 상당한 도전과제임.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IA를 지속하는 것은, 규제영향을 화폐가치화 한다는 것 보다는 정부개입 과정 및 정책이 효과로 이어지는 논리와 근거를 정부가 사전에 검토한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2) 규제기관 및 집행체계

- 규제기관들은 정부출연기관이며 정부 부문임에 분명하나 특정 부처 혹은 특정 장관에 소속된 기관은 아님. 따라서 정부 부문이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못함.
- 다만 규제기관의 독립성이란 법에 정해진 틀 내에서의 자율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기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기관의 적정한 수준의 자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음.
- 규제집행 기관은 중앙정부가 아닌 독립된 규제기관이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집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 LSE 학술연구자 면담

